##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권성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762

발의연월일: 2021. 7. 27.

발 의 자: 권성동·정진석·홍문표

윤창현 • 정운천 • 류성걸

윤영석 • 윤한홍 • 서일준

김희국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허가와 원자로의 운전이나 핵연료물질·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급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현행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규정하는 등 결격사유 형벌 기준을 금고형으로 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서 금고형은 과거 노동을 천시하던 사고의 잔재물로서 현대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처벌 유형이어서 이를 삭제하고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키는 것으로 2014년 5월에 개정되었음.

이에 금고형이 현행법의 법정형에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격 사유에 그대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, 결격사유 형벌 기준을 금 고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2호 등). 법률 제 호

##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제2호 중 "금고"를 "징역"으로 한다. 제85조제3호 및 제5호 중 "금고"를 각각 "징역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	제14조(결격사유)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	
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	
없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이 법을 위반하여 <u>금고</u> 이상	2 <u>징역</u>
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	
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	
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	
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	
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	
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	
3. • 4. (생 략)	3. • 4. (현행과 같음)
제85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	제85조(결격사유)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	
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	
없다.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이 법을 위반하여 <u>금고</u> 이상	3 <u>징역</u>
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	
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	
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	
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	

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#### 4. (생략)

5.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및 개수·보수에 관한 업무,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재료·부품 등의 납품·검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129조·제130조·제132조 및 제133조의 로를 범하여 급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4. (현행과 같음)
5
<del></del>